



환 경 부

수신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판매자 귀하
(경유)

제목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시장 안전성조사 실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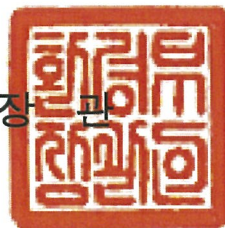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3조에 따라 세정제, 방향제 등 18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고시 제6조에 따라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별표2)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의 겉면에 표시사항(별표2, 7)을 표기하여 시중에 유통하여야 합니다.
4. 환경부에서는 시중유통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무작위 수거·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안전성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7.9.1~12.31(4개월)
- 조사대상 : 위해우려제품 17종(고시 별표1 참조)
 - * 경과규정이 적용 중인 인쇄용 잉크·토너는 제외
- 조사내용 : 안전기준(고시 별표2)과 표시기준(고시 별표2,7) 준수 여부
- 중점조사대상 : 개정고시(제2016-254호, '16.12.30)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품목 중심
 - 17종 스프레이형 제품 및 방향제 전 제형 : CMIT/MIT 사용금지
 - 스프레이형 탈취제 : DDAC 함량제한(섬유용 0.18%, 실내공기용 0.0015%)
 - 그 외 자동차용품, 세제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 집중 조사
- ※ 종전 고시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제품 중에서 강화된 안전기준('16.12.30.)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경과규정 기간 동안 회수되어야 함
- 위반제품 조치계획
 -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개선)명령 및 판매금지 등 조치명령
 - 법 제49조에 따른 고발조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언론 공표 및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 대상

끝.

환 경 부 장 관



주무관 류경호 행정사무관 김종민 과장 전결 2017. 8. 1.
안세창

협조자

시행 화학제품관리과-367 (2017. 8. 1.)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 / <http://me.go.kr>
화학제품TF

전화번호 044-201-6826 팩스번호 044-201-6786 / ryukh0502@me.go.kr / 대국민 공개